

주차장 운영세칙

제정	2006. 09. 19
개정	2007. 02. 14
개정	2007. 09. 03
개정	2007. 12. 26
개정	2008. 03. 25
개정	2008. 10. 27
개정	2008. 12. 23
개정	2009. 01. 30
개정	2010. 01. 14
개정	2010. 12. 29
개정	2011. 10. 11
개정	2013. 03. 28
개정	2015. 08. 25
개정	2015. 10. 27
개정	2016. 07. 13
개정	2018. 03. 29
개정	2018. 08. 0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아트센터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아트센터 내에 설치된 지하·야외 주차 시설 및 주차가능 시설을 말한다.
2. “자동차”라 함은 아트센터 내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12인승 이하의 승합 및 자가용 자동차
 - 나. 적재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다. 50인승 이하의 버스
3. “주차장 운영관리 책임자”라 함은(이하 “책임자”라 한다)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원 및 징수요금 관리에 필요한 직무와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남아트센터 내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대상차량)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 요금의 징수금액 및 대상 차량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및 무료개방) 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00:00시부터 24:0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7.12.26.>

② 주차장 무료개방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7.12.26.>

2. 어린이날, 시민의 날<개정 2007.2.14., 2010.1.14., 2011.10.11.>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2.14., 2010.12.29.>

③ 대표이사는 주차수요·교통혼잡 및 동절기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재단 이사 차량, 시 출연기관장 차량 및 관용차량
<개정 2007.9.3.>

2. 성남시·성남문화재단 주관 행사 차량

3. 취재차량

4. 후원회 회원 및 “별표 2”의 유료회원, 자원봉사자 차량 <개정 2007.9.3., 2013.3.28., 2018.3.29.>

5. 삭제 <2007.9.3.>

6. 삭제 <2007.9.3.>

7. 삭제 <2015.10.27.>

8. 기타 대표이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07.2.14., 2010.12.29.>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개정 2015.10.27.>

2. 국가유공자

3. 경자동차(1,000cc 이하) <개정 2008.3.25.>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신설 2007.2.14.> <개정 2015.10.27.>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신설 2016.7.13.>

6.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신설 2016.7.13.>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환불) 주차요금의 징수방법과 환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9.>

- ① 주차요금은 입차 시부터 출차 시까지의 시간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업무방문 차량은 해당부서 확인인 점검 후 징수한다. <개정 2007.2.14.>
- ② 정기주차권은 월 단위로 발행하며 정기주차권 판매대장에 기록한다. <단서신설 2007.9.3.> <개정 2015.10.27.>
- ③ 삭제 <2015.10.27.>
- ④ 월 정기 주차요금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요금을 부과하며, 월 정기주차를 취소할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한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8.8.6.>

제9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07:00시 해당근무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인수된 금액은 당일 중으로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2010.1.14.>

② 공휴일 등 은행마감 시간 이후 입금하지 못한 금액은 금고에 예치시킨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정산소에서 징수한 주차요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정산소 주차수입 출납원과 정산소 주차수입분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9.3.>

④ 주차수입 징수관은 도주 등 부득이하게 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 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관부서장은 담당 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07.9.3.> <개정 2009.1.30., 2015.10.27.>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방치차량조치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당해 차량에 부착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관할 구청에 견인 요구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주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견인보관소의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거부) 책임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면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발생한 피해
2.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 집행 등으로 발생한 피해
4.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이용차량은 주차관리 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성남아트센터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3.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차량 내에 귀중품 보관을 금지한다.

제15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6.9.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3.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0.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신규계약 체결하여 입점하는 업체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7.2.14., 2007.9.3., 2007.12.26., 2008.10.27., 2010.12.29., 2013.3.28., 2015.8.25., 2015.10.27., 2018.3.29.>

주차요금 부과 · 징수료

(제4조 관련)

구 분	소 형 (5톤 미만 35인승 이하)	대 형 (5톤 이상 35인승 이상)	비 고
40분 미만	-	-	▪ 무료
40분	400원	800원	삭제 <2015.10.27.>
10분당	300원	600원	
입 점 업 체 이 용 고 객 용	400원	800원	▪ 입점업체 판매용 (1시간권) <신설 2015.8.25.><개정 2018.3.29.>
월 정기권(1종)	20,000원	40,000원	▪ 재단 직원 및 시립예술단 단원, 입주업체 차량 ▪ 레스토랑&카페, 구내식당 등 <개정 2015.10.27.>
월 정기권(2종)	40,000원	80,000원	▪ 공연 및 전시, 행사 관계자 (출연진, 스태프 등) (대관 및 자체기획 동일 적용)
월정기권(3종)	50,000원	100,000원	▪ 기타 외부 월 정기주차차량
일일주차(1종)	6,000원	12,000원	▪ 일반 관람객 및 내방객
일일주차(2종)	2,000원	4,000원	▪ 공연, 전시 관계자, 회의실, 연습실 이용객 공사 등 업무 관련 차량
공 연 관 랑 객 미 디 어 센 터 이 용 객	2,000원	4,000원	▪ 공연티켓 제시할 시 공연시간 포함 5시간 이내 ▪ 미디어센터 유료이용객 확인 시 5시간 이내
전 시 관 랑 객 수 강 생 용	1,000원	2,000원	▪ 전시티켓 제시할 시 2시간 이내 ▪ 아카데미, 미디어센터 수강생 8시간 이내<개정 2018.3.29.>



[별표 2]

<신설 2007.9.3.> <개정 2008.12.23., 2010.12.29., 2013.3.28., 2015.10.27., 2018.3.29.>

유료회원 및 자원봉사자 차량 무료주차권

(제6조 관련)

구 분		일일주차권(년)	비 고
자 원 봉 사 자		-	▪ 봉사당일만 인정 <개정 2015.10.27.>
< 삭 제 >		<삭제>	<삭제 2018.3.29.>
유료회원	V I P	10매	삭제 <2015.10.27.>
	골 드	5매	삭제 <2015.10.27.>
	실 버	3매	삭제 <2015.10.27.>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14.>

일 일 결 산 서

☐ 일 자 : 년 월 일

☐ 주차요금 수납현황

결 계	담당자	부 장

구 분	부 과 차 량								쿠폰집계				
	합계		일반 출차		공연 할인		전시 할인		1 시 간	3 시 간	50% (경차)	100% (무료)	중 대 형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대 수	대 수	대 수	대 수
일 계													
정산소1													
정산소2													
정산소3													
사전정산													

☐ 인계·인수사항

구 분		수납된 주차요금	인 계 자	인 수 자
일 계		매 원	(인)	(인)
07:00 ~ 15:00	정산소1	매 원	(인)	(인)
	정산소2	매 원	(인)	(인)
15:00 ~ 23:00	정산소3	매 원	(인)	(인)
	정산소1	매 원	(인)	(인)
23:00 ~ 07:00	정산소2	매 원	(인)	(인)
	정산소3	매 원	(인)	(인)
사전정산	정산소3	매 원	(인)	(인)
	인증기() / 종이주차권()			(인)

1일 정산금액 :

원,

.

1일수납금액 :

원

※ 오늘의 공연 및 전시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0.1.14>

근 무 일 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결 재	담당자	부 장

구 분	정산소	근무자	정산요금	수납요금	과부족	시제금	인계자	서 명	사유 및 특이사항
07:00~16:00	정산소1								
	정산소2								
	정산소3								
16:00~23:00	정산소1								
	정산소2								
	정산소3								
야 간	정산소3								
사전정산									
합 계									

☐ 금일 공연 및 전시

구 분	공연 및 전시	시 간
오 폐 라		
콘 서 트		
앙 상 블		
전 시		

○ 휴일 근무자

○ 시간외 근무자

○ 특이사항 및 처리내역

이 름	시 간	이 름	시 간	※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0.1.14.>

근무자별 입출차 현황

○ 일 자 : 년 월 일

○ 주차요금 수납현황

결	담당자	부 장
제		

구 분	부과차량(할인항목)								쿠폰집계				
	합계		일반 출차		공연 할인		전시 할인		1 시 간	3 시 간	50% (경차)	100% (무료)	중 대 형
	대 수	금 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대수	대수	대수	대수
일 계													
정산소1													
정산소2													
정산소3													
사전정산													

☐ 인계 · 인수사항

구 분		입 차	출 차	금 액	근무자
일 계					(인)
07:00~15:00	정산소1				(인)
	정산소2				(인)
	정산소3				(인)
15:00~23:00	정산소1				(인)
	정산소2				(인)
	정산소3				(인)
23:00~ 07:00	정산소3				(인)
사전정산	인증기()권 / 종이주차권()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0.27.>

방치차량조치보고

(No :)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시 분)

72시간 경과시점 : 년 월 일(시 분)

위 차량은 72시간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 차 영 수 증
첨 부 란

 년 월 일

결	담당자	부 장	국 장
재			

..... 절 취 선

(No :)

이 동 의 퇴 서

아래 차량은 성남문화재단 부설주차장내에서 72시간이상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귀 견인사무소에 이동·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시 분)

이 동 의 퇴 시 간 : 년 월 일(시 분)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인)



